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90
----------	------

2022년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2월 1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

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다. 위탁기간 : 3년(2022.5.1. ~ 2025.4.30.)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마.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50(중계동)
- 규모 : 대지 4,959㎡/건물 4,910㎡(지하1층, 지상4층, 창업보육센터)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피부관리, 제과·제빵, 조리, 헤어디자인, 의상디자인 등), 상담실, 창담실, 창업보육센터, 북부새로일하기센터 등
- 인력현황 : 12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4명, 취업팀 3명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22년 소요예산(안) : 금1,174백만원(2022년 예산)

- 인건비 623백만원, 사무비 등 336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215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별도평가체계에 따라 실시(여성능력개발원 주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Ⅲ. 검토보고의 요지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2012년 12월)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의3제2항¹⁾에 따라 재위탁²⁾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임.
- 여성발전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제2항³⁾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⁴⁾,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⁵⁾ 등에 따라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3)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시설로 과거의 부녀복지관 3곳(구로, 마포, 노원)을 1996년 9월 30일자로 개칭하여 현재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붙임1 참고】

- 초기에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하였으나 1999년 7월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2년 동부여성발전센터, 2003년 중부여성발전센터, 2004년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 순서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시장이 위탁하려는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사무의 구체적 내용과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경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89. 09. 08.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개관<input type="checkbox"/> `79. 10. ~ `04. 4. 서울시 직영 운영<input type="checkbox"/> `04.05.01 ~ 민간위탁◁ 1회차 공개모집 `04.5.1.~`07.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

◁ 2회차 공개모집 '07.5.1.~'10.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3회차 공개모집 '10.5.1.~'13.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2012.12.11. 시의회 동의

◁ 4회차 공개모집 '13.5.1.~'16.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5회차 공개모집 '16.5.1.~'19.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6회차 공개모집 '19.5.1.~'22.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21. 12월 민간위탁재위탁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22. 2월예정)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제2항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7)에서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등은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조례」 제4조8) 및 제6조9)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

-
- 6)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7)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2년 1월 31일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184개(여성가족정책실 65개, 복지정책실 88개, 시민건강국 31개)로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424개)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붙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현황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신월동)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동)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규모	대지3,312㎡ 건물7,406㎡	대지1,551㎡ 건물3,472㎡	대지15,067㎡ 건물 5,786㎡	대지4,959㎡ 건물4,910㎡	대지2,010㎡ 건물3,871㎡
설립	'02.5.1.	'97.12.03.	'79.10.26.	'89.9.8.	'86.12.16.
명칭 · 조직 변경	동부여발 →동부여성플라자 (’05.11) →여성능력개발원 (’07.5) →여능력원 조직개편에 따른 동부여발 기능 분리·복원(’14.10)	동부여발	구로부녀복지관 →남부여발(’96.9)	노원부녀복지관 →북부여발(’96.9)	마포복지관 →중부여발(’96.9)
운영 방식	민간위탁	직영 ↓ 민간위탁(’99.07)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3.10)
위탁 법인 (대표)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이인자)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장만희)	(사)서울여성노동자 회 (신상아)	(사)한국여학사협 회 (오민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위탁 기간	'20.10.01.~ '23.09.30.	'21.03.01.~ '24.02.29.	'19.05.01.~ '22.04.30.	'19.05.01.~ '22.04.30.	'21.10.15.~ '24.10.14.
인력	14명 *창플(2명)포함	11명	12명	12명	11명
'22 예산 (민간위탁금) (백만원)	1,655**(여성 창업플라자 포함)	1,026	1,144	1,174	98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91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2.5.1. ~ 2025.4.30.)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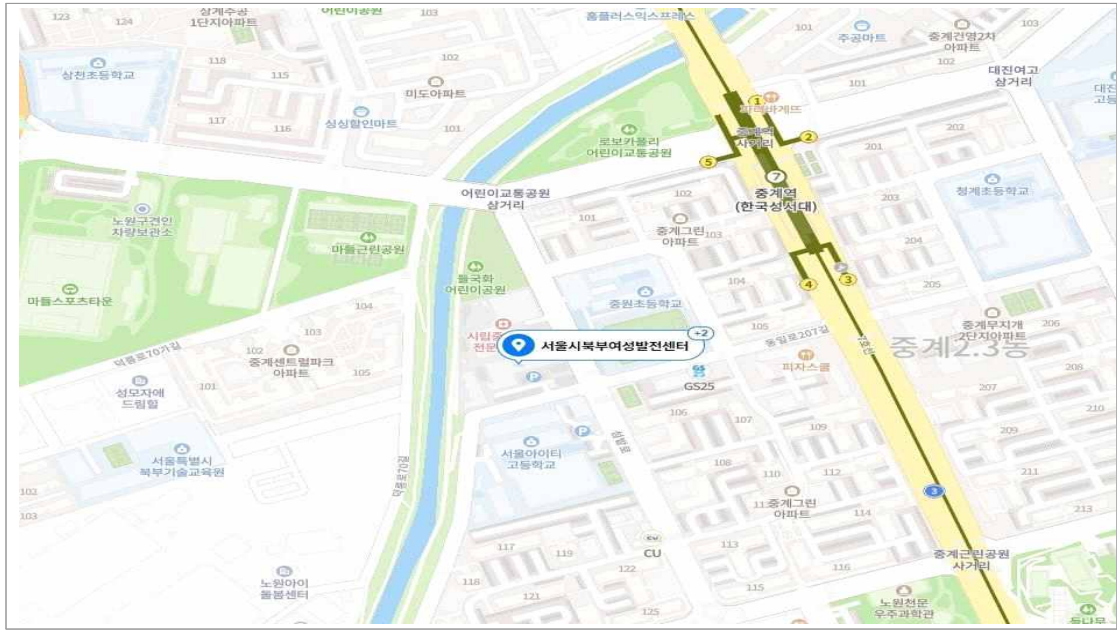
마.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50(중계동)
- 규 모 : 대지 4,959㎡/건물 4,910㎡(자하1층,지상4층,창업보육센터)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피부관리, 제과·제빵, 조리, 헤어디자인, 의상디자인 등), 상담실, 창업보육센터, 북부새로일하기센터 등
- 인력현황 : 12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4명, 취업팀 3명

○ 위치도



사. 수탁기간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2.1.11.)

아. 소요예산 : 금1,174백만원(2022년 예산)

- 인건비 623백만원, 사무비 등 336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215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별도평가체계에 따라 실시(여성능력개발원 주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작성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하혜정(☎ 2133-5030)